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20. . .	
연 월 일	(제 회)	

산 립 조 합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조합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업의 새로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7096호, 2020.3.24. 공포, 2020.9.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합의 자산규모에 따라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기준을 정함(제7조의2 신설)

- 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합장을 상임·비상임으로 정하는 기준을 「산림조합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에 따라 정함

- 1,000억 원 미만 : 상임
- 1,000억 원 ~ 2,500억 원 미만 : 상임 또는 비상임
- 2,500억 원 이상 : 비상임

나. 조합의 상임이사·중앙회 사업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함(제8조, 제12조, 제20조 개정)

- 조합의 상임이사·중앙회 사업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금융기관 근무경력의 해당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으로 확대

다.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제11조의13 신설)

- 중앙회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함(유사기관인 농·수협과 동일)
 - 중앙회·조합, 또는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
 - 임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 석사이상으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회계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

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21조 등 개정)

- “좌수”를 “계좌 수”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를 "사업대표이사(이하 "사업대표이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부

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한다.

제11조의2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1좌”를 “1계좌”로, “총좌수”를 “총 계좌 수”로 하며, 같은 호 및 제3호 중 “총좌수”를 각각 “총 계좌 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좌수”를 각각 “계좌 수”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한다.

제1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3(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0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임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2조 제목 “(부회장의 자격요건)”을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를 “사람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를 “사람으로서 제1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의 감사·회계 또는 산림행정 부문에서 상시근무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 5인”을 “사람 5명”으로 한다.

1. 사업대표이사

제28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의13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2021년 1월 1일

7. 제2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요건: 2021년 1월 1일

부 칙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7조의2(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u> <u>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u>
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제35조제5항----- ----- ----- ----- --- 1. (현행과 같음)

2.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 다. (생략)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생략)

제9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① 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임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중앙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제9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① -

-

-

-

-

-

-

- . -

-

-

-

-

-

-

사업대표이사(이하 “사업대표이

사”라 한다)-

-

-

-.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

② _____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생략)

6.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내용 및 좌수

7. ~ 9. (생략)

제11조의4(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1계좌 ----- 총 계좌 수

3. ----- 총 계좌 수-----

4. -----
----- 계좌 수

5. (현행과 같음)

6. -----
----- 계좌 수

7. ~ 9.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

----- 계좌 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13(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0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임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제12조(부회장의 자격요건) 법 제 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제20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19

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2조(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

1. -----
-----사람
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사람

3. -----

-----사
람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사람

제20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

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감사·회계 또는 산림행정 부문에서 상시근무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회계 또는 산림행정 부문에서 상시근무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사람으로서 제1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사람

3. -----

-----사람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회장

2. 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인

3. 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 5인

③ (생략)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제12조에 따른 부회장의 자격
요건: 2017년 1월 1일

<신설>

② (생략)

-----1명-----9명-----
-----.

② -----
-----각 호의 사람이-----.

1. 사업대표이사

2. -----

-----1명

3. -----
-----사람 5명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의13에 따른 감사위원
의 자격 요건: 2021년 1월 1일

6. ----- 사업대표이사 -----

7. 제2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요건: 2021년 1월 1일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037